

실지감사 결과 조치내용 요약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1 | 현지 시정 | 경비지원금 및 지체상금 결산 미반영 | 각 부서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지침 통보」(총무320-2193, 2014.12.17.)에 따라 수익 발생사실을 총무팀에 통보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함에도, ○○○○센터는 지원금의 발생사실을 총무팀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당해연도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팀은 초음파장비(Ultrasound system) 외 1건의 검수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총 7,335,000원을 경리파트에 통보하지 않아 당해연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 | 총무팀(경리파트)으로 하여금 협회 지원금 총 5,993,696원은 기타미수금(계정과목 11179)으로, 지체상금 총 7,335,000원은 미수지체상금(계정과목 11183)으로 결산에 반영토록 함. | 분당 결산 |
| 2 | 현지 시정 | 환경 개선부담금 과다 계상 및 건물유지보수비 미계상 | 분당병원 편의시설 임대 운영비용 중 환경개선부담금은 병원이 총괄 납부한 금액에서 임대업체 면적에 따른 업체별 부담분을 제외한 후 비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 중인 자산은 취득을 완료한 때에 본 계정으로 대체처리 하여야 함에도, 임대업체에서 부담한 환경개선부담금 총 32건, 5,190,685원을 기타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의료외수익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신관 3층 수술장 천장보수공사 및 신관 106병동 실리콘 보완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회계처리하지 아니함. | 총무팀(경리파트)으로 하여금 임대업체 부담분 총 5,190,685원은 기타의 잡이익 계정에서 제부담금 계정으로, 신관 천장보수공사 등 2건 총 5,258,000원은 건설 중인 자산에서 건물유지보수비 계정으로 각각 계상토록 함. | 분당 결산 |
| 3 | 현지 시정 | ◇◇팀 가수금 및 장기이식 가수금 미대체 |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기재하여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함에도, ◇◇팀은 가수금으로 입금된 퇴원기타미수금 46,925,220원 | 총무팀으로 하여금 가수금 계정에 있는 총 111,957,100원에 대해 본계정인 퇴원기타미수금 | 분당 결산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및 외래기타미수금 3,831,880원을 본계정으로 대체하지 않았고, 또한 ◎◎팀은 장기이식센터 가수금으로 입금 된 61,200,000원에 대해 본계정인 장기이식미수금으로 대체하지 않았으며, 또한 ☆☆의료원으로부터 간장을 기증(14.12.21)받은 수혜자(윤○○)의 장기대금 3,800,000원을 장기이식미수금으로 반영하지 않고 결산에 누락함. | 과 외래기타미수금 및 장기이식미수금 계정으로 각각 결산에 계상토록 하였고, 누락된 장기이식미수금 3,800,000원도 추가 계상토록 함. | |
| 4 | 현지 시정 | 수술용 로봇장 비 등 외주용 역비 과대계상 | □□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로봇 장비의 외주용역비 56,183천원('14.11월~ '15.1월)을 전액 계상하여, 미경과 비용인 2015.1월분 유지보수료 18,728천원을 차감하지 않았고, 또한 ◇◇과에서 사용하는 삼중감마카메라 장비의 외주용역비 21,436천원('14.10월~'15.3월)에 대해서도 미경과 비용인 2015년 1,2,3월분 유지보수료 11,071천원을 차감하지 않음으로써, 2014년도 외주용역비를 과대 계상함. | 총무팀(경리파트)으로 하여금 2014년도 외주용역비로 과대 계상한 29,799천원을 차감하여 결산에 반영토록 함. | 분당 결산 |
| 5 | 현지 시정 | 의료사회사업 비 등 미지급 비용 및 공여 제대혈 채취료 미반영 | ◎◎◎◎사업단에서 저소득 소외계층 의료지원 사업에 비용으로 집행한 12월 저소득 노인 진료비 39,777,360원, 자원봉사자 운영비 25,536,509원, 함춘후원회 12월 환자치료비 123,198,210원 등 의료사회사업에 소요된 비용 총 188,512,079원에 대하여 총무팀으로 통보하지 않아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팀은 2014.12.31. ○○○병원으로부터 입금된 공여제대혈 채취료 수익금 100,000원을 기타의료부대수익금 계정에 누락하여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 | ◎◎◎◎사업단으로 하여금 미반영된 의료사회사업비용(188,512,079원)에 대하여 즉시 총무팀으로 통보토록 하여 미지급비용계정으로, 누락된 공여제대혈 채취료 100천원을 기타의료부대수익금 계정으로 각각 결산에 반영토록 함. | 분당 결산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6 | 현지 시정 | 투자유가증권 미평가 | 2014년도 해당 유가증권을 결산종료일(2014.12.31.) 기준으로 재평가하지 않고, 전년도(2013년) 금액인 169,361천원으로 결산에 반영함에 따라 발생이자분 5,560천원[NH 농협증권 평가금액]은 결산에 누락함. | 총무팀(경리파트)으로 하여금 투자유가증권을 재평가하여 결산일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한 금액(174,921천원)으로 계상토록 함. | 분당 결산 |
| 7 | 주의 | 외부 강연수익 회계처리 부적 정 | ☆☆☆☆☆팀은 「2014회계연도 결산지침 통보」(총무320-2193, 2014.12.17.)에 의거하여 '14.8.23 강연한 '△△△과 임OO교수 외 1명의 외부기관 강연수익' 3건, 총 3,050천원을 총무팀에 통보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 | ☆☆☆☆☆팀에 주의 조치하고 강연수익을 결산에 반영함. | 분당 결산 |
| 8 | 시정 주의 | ○○○○과 핫셀 장비 자산등재 소홀 | ○○○○과는 핫셀 장비(장비가액 95백만원, 설치비용 포함)의 설치가 완료된 2012.6.30.이후에 기부채납원을 작성하지 않아 병원 자산으로 등재하지 아니함. | ○○○○과에 주의 조치하고 장비 자산등재 완료함. | 분당 결산 |
| 9 | 현지 시정 | 소송 지연이 자, 지체상금 및 외부강연수 익 결산 미반 영 | ○○팀은 2009년 발생한 함춘후원회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 및 본압류 결정에 따라 원금(637,651천원)과는 별도로 지연이자 724,999천원(2014.12.31.기준) 중 회수한 5,742천원을 차감한 719,258천원을 결산부서로 통보하지 않아 이를 당해연도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주)☆☆약품 등 2개 업체와 단가계약이 체결된 품목 중 병원의 납품지시에도 불구하고, 납품하지 않아 제3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단가차액 환수금 40,534천원에 대해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경리과는 외부 강연수익 등 10건(총10,019천원)에 대해 통보를 받아 세금계 | 경리과로 하여금 2014회계연도 결산에 누락된 지연이자 719,258천원, 단가차액 환수금 40,534천원 및 외부강연료 10,019천원을 각각 잡이익, 지체상금, 강연수익으로 결산에 반영토록 함. | 본원 결산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음. | | |
| 10 | 현지 시정 | 파견교직원 (SKSH, 세종 시립의원) 급 여 미수금 결 산 미반영 | 경영성과를 정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미입금된 인건비가 발생하면 결산에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과에서는 ○○과가 우선 지급한 SKSH 파견교직원의 12월분 급여 106,593천원과 세종시립의원 파견 진료교수의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122,906천원 등 총 229,499천원에 대해 결산에 계상하지 않았음. | 경리과로 하여금 미입금되어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총 229,499천원을 기타미수금 계정으로 각각 결산에 반영토록 조치함. | 본원 결산 |
| 11 | 현지 시정 | 외부위탁연구 수익 과다 계 상 | ◎◎과에서는 2014회계연도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주)의 ◎◎과 주○○교수 연구건 등 20건, 총 676,470천원을 외부 위탁연구수익으로 잘못 계상하였고, 상기건 중 연구비가 입금된 (사)△△△△협회의 ◇◇과 윤□□ 교수 연구건 등 3건은 부가가치세 11,767천원을 수익으로 과다 계상하는 등 총 688,238천원을 외부위탁연구수익으로 과다 계상함. | 경리과로 하여금 과다계상된 외부위탁연구수익 총 688,238천원을 감하도록함. | 본원 결산 |
| 12 | 현지 시정 | 고정자산 미처 분으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 미계상 | △△과에서는 KT사옥 1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공사비 25,930천원)를 시행하고 통합물류실에 자산등재요청하여 기타유형자산으로 등재하였으나, 해당 건물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산관리지침에 따라 고정자산처분조서를 작성하여 자산관리부서에 송부하여 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 △△과 및 자산관리부서로 하여금 자산관리지침에 따른 자산처분 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상기 자산 잔존가액 25,930천원을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회계처리 하도록 | 본원 결산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고정자산처분조서를 자산관리부서에 송부하지 않아 잔존가액 25,930천원을 당해연도 결산에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기타유형자산으로 반영함. | 록 함. | |
| 13 | 현지 시정 | 임대영업장 급수업종 변경공사 시설분담금 회계처리 부적정 | ○○과에서는 1997년 서울대학교병원 내 임대영업장(직원식당) 급수업종 변경을 위해 이루어진 급수공사에서 공사비 451,470원과 시설분담금 775,000원을 수익적 지출로 당기비용처리 하여야 함에도, 공사비 451,470원은 건물수선비로 당기비용 처리하였으나 시설분담금 775,000원을 기타보증금으로 처리하여 회계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 | 경리과로 하여금 상기 기타보증금 775,000원을 잡손실로 당해연도 결산에 반영하도록 함. | 본원 결산 |
| 14 | 현지 시정 | 기타 외주용역비 및 기타지급수수료 본계정 미대체 | DR센터 기초설계용역 외 2건(총 209,000천원)은 2009년에 이미 관련 DR센터 구축사업이 중단된 바 전액(209백만원) 설계용역비에 해당함에도 본계정인 기타외주용역비(51619)로 대체 처리하지 않았으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지출처리 완료한 국제특허 비용지급 외 14건(총 26,344천원)은 특허등록 거절 및 포기 등의 사유로 무형자산(특허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본계정인 기타지급수수료(51419)으로 대체 처리하지 아니함. | 경리과로 하여금 기타고정자산(건설가)에 반영되어 있는 ‘DR센터 기초설계용역 외 2건’(209,000,000원) 및 ‘국제특허 비용지급 외 14건’(26,344,250원)에 대하여 기타외주용역비 및 기타지급수수료 계정으로 각각 결산에 반영토록함. | 본원 결산 |
| 15 | 현지 시정 | 인재원 운영비용 계정 대체 | 문경인재원 운영용역비, 인재원 미화 추가용역비 2건(44,791천원)은 인재원운영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의료부대비용 계정으로 처리함. | 경리과로 하여금 회계계정과목운영세칙 계정과목에 부합하게 문경인재원운영용역비 외 1건(44,791천원)은 | 본원 결산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 인재원운영비용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함. | |
| 16 | 현지시정 | □□□ 시설관리 및 편의시설 위탁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미징수 | ○○과는 □□□ 시설관리 및 편의시설 위탁 용역업체인 (주)☆☆☆☆☆로 하여금 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 8,000천원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14회계연도 중 미납된 상기 임대보증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 | 경리과로 하여금 미납된 임대보증금 8,000천원을 환수토록 하여 2015.2.6. 입금되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기타미수금)하도록 함. | 본원결산 |
| 17 | 모범사례 |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협상을 통한 비용절감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카드사의 일방적 인상통보에 대응하여, 수수료율 인상거부 공문 발송 등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 협상을 진행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650백만원을 환급받음. |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경리과에는 표창을 함. | 본원결산 |
| 18 | 주의시정 | 미술품 불용처리 누락 | ◇◇과는 화재로 인해 소실된 벽면부조에 대한 망실·훼손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산관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행복관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석재조각상은 『미술품 및 골동품(12443)』에 해당하여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님에도, 『기타의유형자산(12449)』으로 계정분류하여 내용연수(5년) 동안 취득금액에서 잔존가액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하여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석재조각상의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함. | ◇◇과에 주의 조치하고 벽면부조는 손망실처리하고 석재조각상은 결산에 반영함. | 보라매결산 |
| 19 | 권고 | 세입세출서 제출 관련 | ◎◎과는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 관련부서와 협조 | 보라매결산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규정 미준수 | <p>대해 2015.2.24. 제56차 정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3.11. 본원 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본원 원장은 2014회계연도 보라매병원 결산(안)을 2015.2.28.까지 이사회에 보고한 후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사회 일정(2015.2.24.)보다 늦게 결산(안) 승인 요청을 받아 별도 이사회 보고 없이 2015.3.18. 서울특별시시장에게 2014회계연도 보라매병원 결산서를 제출함.</p> | <p>하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함.</p> | |
| 20 | 현지 시정 | 미수수익 결 산 미반영 | <p>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에 따라 2015.1.21. 입금된 2014년 12월분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수익 5,600천원을 ◇◇◇과의 통보 누락으로 결산에 미반영 하였으며, 손익계정 잔액을 결산 전에 정리하여 미수수익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해당 부서의 결산 통보 누락으로 총 11,506천원의 미수수익을 결산에 미반영함.</p> | <p>경리과로 하여금 미수수익 총 11,506천원을 각각의 수익 계정으로 결산에 반영토록 함.</p> | 보라매 결산 |
| 21 | 현지 시정 | 미지급비용 결 산 미반영 | <p>☆☆☆☆팀은 2015.2.5. 지출된 『2014년 12월 클라우드서비스 사용료』, 『2014년 12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등 PC통신사용료 2건, 총 11,461천원을 경리과에 통보하지 않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함.</p> | <p>경리과로 하여금 PC통신사용료 비용 총 11,461천원을 당해연도 미지급비용으로 결산에 반영토록 함.</p> | 보라매 결산 |
| 22 | 현지 시정 | 임상교수요원 퇴직금 소송 지연이자 미 통보 | <p>서울고등법원(2011나35205 퇴직급여금)의 판결에 따라 2011년 이후 임상교수요원 퇴직자에 대하여 계속적·정기적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항목을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퇴직금 추가지급 예상액 1,928,511천원을 단기부채성충당금(21229, 기타충당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퇴직금 소송</p> | <p>총무과로 하여금 동 판례의 지연이자율 5%를 임상교수요원 퇴직일로부터 2014.12.31. 현재까지의 지연이자 109,230천원을 부</p> | 보라매 결산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관련 총당부채 금액 산정 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야 함에도, 임상교수요원 퇴직금 소송 관련 부채성총당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예상액을 통보하지 않아 결산에 누락함. | 채성총당금에 추가 계상토록 함. | |
| 23 | 현지 시정 | 미수임대료 부가가치세 예수금 미계상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2014.12월분 임대료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7,072천원을 포함한 미입금 총액 77,795천원을 미수임대료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임대료수익 70,723천원만을 미수임대료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예수금 7,072천원은 미계상함에 따라 자산(미수임대료)과 부채(부가가치세 예수금)를 동액만큼 과소 계상함. | 경리과로 하여금 12월분 임대료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7,072천원을 포함하여 미수임대료를 계상토록 함. | 보라매 결산 |
| 24 | 현지 시정 | 임차자산 공사비 불용처리 누락 | 기획과 사무실을 원내로 이전하고 임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팀은 임차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자산 가치가 없는 임차자산 공사비에 대한 고정자산처분조서를 작성·송부하지 않아 고정자산 총괄대장에 임차자산 공사비 8,030,000원이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음. | 임대사무실 통신공사에 대한 고정자산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산관리부서로 송부함 | 보라매 결산 |
| 25 | 현지 시정 | 건설중인 자산의 자산 등재 부적정 | ◇◇◇◇센터 증축공사 설계용역비(18,700천원)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정리한 후 체력증진센터의 준공 시 총 공사비와 함께 자산등재 하여야 함에도, 설계용역비 18,700천원을 검수와 함께 건물부속설비(12322)로 자산등재 요청하여 건물부속설비 및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함. | ◇◇◇◇센터 설계용역비를 완공 시점에 총공사비와 함께 자산등재 요청 하였고, □□□□팀으로 하여금 건물부속설비로 자산 등재한 ◇ | 보라매 결산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 ◇◇◇센터 설계용역비를 취소하고 ◇◇◇◇센터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토록 함. | |
| 26 | 현지시정 | 가퇴원 선수금 미환불금 회계처리 부적정 | 가퇴원 선수금 중 미환불금은 통상적으로 환자부담 진료비 예상액보다 많은 금액을 수납한 후 진료비 내역이 확정되면 차액을 환불해야 하나 내원객의 연락처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는 금원으로 진료비선수금에서 기타유동부채로 계정 변경하여야 함에도, ○○과에서는 미환불금 잔액 11,175천원에 대한 세부내역 및 관련 내용을 결산 통보하지 않아, 가퇴원 선수금 중 미환불금을 기타유동부채로 계정 변경하지 않고 기타선수금으로 결산에 반영함. | ○○과로 하여금 가퇴원 선수금 미환불금 내역을 즉시 경리과로 통보토록 하여 기타선수금에서 기타유동부채로 계정 변경 | 보라매결산 |
| 27 | 모범사례 | 착한가게 운영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 | 발전후원팀은 기존에 정채된 원내 나눔문화를 탈피하여 색다른 모금문화를 창출하고자 ‘생활 가까이 있는 기부의 방식’을 모토로 삼아 나눔 및 문화행사가 접목된 신개념 팝업스토어인 ‘SNUH 착한가게’를 추진하여 총 14회의 상설바자회를 개최하여 사회공헌·나눔 봉사 사업과 저소득층 환자 지원함. |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발전후원팀에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임. | 본원교육인재개발실 등 |
| 28 | 권고 | 의사직 청렴교육 이수율 향상방안 마련 | 2014년도 일반직(촉탁직, 단시간근무자 포함)의 청렴교육 이수율은 83.8%인 반면, 같은 기간 의사직의 청렴교육 이수율은 3.0%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의사직의 연간 청렴교육 이수율이 일반직에 비하여 현저 | 병원 기본 교육 내 청렴교육 1시간 시행 및 인턴 하계수련회에 청렴교육을 추가함. | 본원교육인재개발실 등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의사적의 청렴교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함. | | |
| 29 | 개선 | 교육연구자문장려비 관련업무 관리부적정 | 약학대학 000이 2014.10.1.에 검적이 해제되었음에도, ◇◇◇◇팀은 교육연구자문보고서 등을 차년도 1월말까지 제출받지 않았으며, 미제출시 기지급된 교육연구자문장려비에 대한 환수 근거(규정 또는 시행세칙 등)를 마련하지 않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함. | 교육연구자문 결과물을 제출 받았으며, 향후 모두 제출토록 함. | 본원교육인재개발실 등 |
| 30 | 개선 | 사이버교육 수강료 징수사무 부적정 | 사이버 어학과정 미수료한 직원에게 교육비를 얼마를 징수할 것인지 내부품의 등 기준과 근거도 없이 내부 토의과정을 통하여 과정당 3만원을 징수하여 온 것으로 조사됨. | 사이버 어 학 과 정 미수료 교육비에 대한 내부결재 득 함. | 본원교육인재개발실 등 |
| 31 | 주의 | 출장 및 시간외 등 복무관리 부적정 | 복무규정 제 38조에 따라 사전에 출장명령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팀은 총 20회를 출장 중 13건은 출장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시간외 등 근무지침에 따라 연장근무명령부를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함에도 2014년 7월부터 2015년 03월까지 총 25건 중 21건은 시간외 근무일 이후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함. | ◇◇◇◇팀에 주 의 조치함. | 본원교육인재개발실 등 |
| 32 | 주의 | 기본품의 일상감사 미경유 | ○○○팀은 '2015년도 각종 마스크 광고료 사용'(129,000,000원) 등 5천만원을 초과하는 총 5건의 경비집행 관련 기본품의를 처리하면서 일상감사를 반복적으로 거치지 아니함. | ○○○팀에 주 의 조치함. | 본원교육인재개발실 등 |
| 33 | 주의 | 병원신문 전산 | 별도의 납기연장 요청 없이 계약종 | 관련자 2명에 주 의 | 본원교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환수 | 화작업 용역관리 부적정 | 료일인 2014.9.8.까지 용역을 완수하지 못했음에도 ◎◎◎팀에서는 보다 완성도 높은 제작을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대신, 20일이 지난 2014.9.29. 계약기간을 2014.11.17.까지(71일) 소급하여 연장하여 계약종료일 익일(2014.9.9.)부터 계약연장일 전일(2014.9.28.)까지 총 20일간 발생한 지체상금 1,188천원을 부과하지 아니함. | 조치하고, 지체상금 환수 조치함. | 육인재 개발실 등 |
| 34 | 현지 시정 | □□□□실 뉴스레터 제작업무 효율화 | □□□□실에서는 뉴스레터 발간을 위하여 매월 구매요구서로 통합물류부에 송부하고, (주)◎◎◎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발간하고 있으나, 수시계약보다는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발간하는 등 관련 업무를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음. |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발간 예정 | 본원교육인재 개발실 등 |
| 35 | 경고 | 수질유해물질 관련 환경기술인 선임 부적정 | 서울대병원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1일 10m ³ 이상 배출하는 제4종사업장으로서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기술인으로 선임하여야 함에도, 담당 부서인 △△과는 관련 자격증보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등 관련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경력 3개월미만의 초임 직원을 환경기술인으로 선임함으로서 관련 법령 준수 및 수질오염물질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 | 환경기술인 재선임 및 △△과에 '경고' 조치함. | 특정감사안전 관리 및 재난 대비체계 점검 |
| 36 | 주의 | 의료폐기물 관리 부적정 | 의료폐기물은 적절한 전용용기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상자형 합성수지류에 보관하게 되어있는 재활용태반을 봉투형 합성수지류에 보관하였고, 골판지류에 넣어야 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조직, 손상성 폐기물 | ☆☆과에 '주의' 조치함. | 특정감사안전 관리 및 재난 대비체계 점검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용기인 상자형 합성수지류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전용용기 바깥쪽에 폐기물 종류와 사용개시일이 표기하지 않는 등 의료폐기물 관리가 소홀하였음. | | |
| 37 | 주의 | 석면건축물 관리 소홀 | 석면건축물은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지휘 감독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석면 함유 건축물 공사 시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아닌 각 공사담당자가 석면 해체공사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등 석면건축물 관리에 소홀하였음. | 석면안전관리대장 누락분 표기하고, ★★과에 ‘주의’ 조치함. | 특정감사안전관리 및 재난대비체계 점검 |
| 38 | 시정 | 의생명연구원 피난 안내도 미설치 | 의생명연구원의 2층(로비층)을 포함한 10층에는 평면배치도 외에 피난안내도를 비치되어 있지 않음. 의생명연구원 내의 각 층 주 출입구 및 비상구 주변에 대피요령, 소화시설 위치, 피난경로 등이 포함된 피난안내도를 비치토록 함. | 피난안내도 구매신청함. | 특정감사안전관리 및 재난대비체계 점검 |
| 39 | 개선 | 시설물 안전정밀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 |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결함부위 증가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보수조치” 등 총 6건의 보수, 보강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간호기숙사 외벽타일 마감재 보안을 위한 “간호기숙사 동측 외벽 방수공사” 등 4건은 보수/보강 조치하였으나, 지하주차장 구조체 결함부위에 대한 보강조치 및 구간호학과 건물 1층 보수반 천장보에 대한 보강조치는 감사일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 주차장 바닥 기밀성 보수 완료함. - 구 간호학과 하중 적치물 제거함. | 특정감사안전관리 및 재난대비체계 점검 |
| 40 | 개선 | 재난 안전관리 | 지침상의 재난대책위원회(위원장 | 해당사항 수정 및 | 특정감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컨트롤타워(지휘체계) 불분명 | 진료부원장)와 매뉴얼상의 재난대책본부(본부장 병원장, 상황실장 진료부원장)가 상이하게 되어 있으며, 매뉴얼상에 사전대비활동 및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복구를 위해 구성된 재난대응팀 및 당직체계도에 2014.2.1.부로 계약 종료된 (주)△△△이 수정되지 않고 잘못 기재되어 있음. | 업데이트함. | 사안전관리 및 재난대비체계 점검 |
| 41 | 개선 | ★★★ 비상계단 난간 안전관리 미흡 | ★★★의 중앙계단은 지상 1층부터 7층까지 계단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난간높이는 법적기준인 90cm이나,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인의 경우 계단 옆의 난간(1층부터 7층까지) 높이가 허리높이보다 현저히 낮아 추락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 이용객의 추락 가능성에 대하여 대비책이 요구됨. | 추락방지 로프 및 안전 매트리스 설치함. | 특정감사안전관리 및 재난대비체계 점검 |
| 42 | 통보 | ☆☆☆☆과 통상야간근무 운영 개선 | ☆☆☆☆과에서는 자체 「순환규정」을 두어 야간근무자의 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실 임○○ 등 5명은 2년을 초과하여 최장 5년 4개월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임. | 장기 야간근무자 5인 중 2명 주간으로 7/1 전환하고 나머지 3명은 2016년도에 전환 계획. | 특정감사안전관리 및 재난대비체계 점검 |
| 43 | 주의 | 본원 제한구역 관리 소홀 | ○○과는 월단위 보호구역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본관 13층 3파트 옥상 출입문은 잠금장치가 잠금 해제되어 있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옥상에 흡연 흔적이 발견되는 등 보호구역 관리에 소홀하였음. | ○○과에 ‘주의’ 조치함. | 특정감사안전관리 및 재난대비체계 점검 |
| 44 | 현지시정 | 승강기 검사필증 미부착 | 2015.2.8.일자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원 | 검사필증을 부착하도록 현지시정함. | 특정감사안전관리 및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내 승강기 총 51대 중 암병원(5대), 의생명연구원(5대), 장례식장(1대)의 승강기에는 검사필증이 미부착되어 있었음. | | 재난 대비체계 점검 |
| 45 | 현지시정 |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부적정 | 갑종방화문이 아닌 어린이병원 1,3층 중앙계단과 의생명연구원 11층 중앙계단 방화문은 고임목을 설치하여 상시 개방되어 있었고, 또한, 본관 1층 내과외래 앞 비상계단에는 청소용구 및 폐기물박스가 적치되어 있었으며, 장례식장 영안실 내 소화전 및 비상유도등 앞에 근조화환들이 비치되어 있는 등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미흡하였음. |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과와 ★★★★★로 하여금 본관1층 내과외래 비상계단에 적치된 청소용구 및 폐기물 박스를 제거하고, 장례식장 영안실 앞의 근조화환들이 방화시설 앞에 놓이지 않도록 각각 “현지시정” 조치함. | 특정감사안전관리 및 재난 대비체계 점검 |
| 46 | 현지시정 | 소방시설 자체 점검 일부 미시행 | 본원 응급실 입구 및 의생명연구원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층 및 4층 등에 비치된 소화전과 소화기는 매월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과로 하여금 본원응급실 입구 소화전을 포함한 원내 소방시설에 대해 소방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월1회 자체점검을 하도록 “현지시정” 조치함. | 특정감사안전관리 및 재난 대비체계 점검 |
| 47 | 현지시정 |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미흡 | □□□ 지하1층 및 지상3층 각 1개소의 옥내소화전 호스를 사용하여 옥외 관수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후 소방호스를 원상복구하지 않았고, 지하1층 전기실 방화문을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하여 목재 고임목을 이용하여 개방하고 있었으며 또한 피난안내도의 크기가 B4(257mm X 364mm)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하나 A4 | ☆☆☆팀으로 하여금 화재시를 대비하여 옥내 소화전 소방호스 사용을 제한하고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였으며, 대피 안내도는 법적 규정에 맞 | 특정감사안전관리 및 재난 대비체계 점검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210mm X 297mm)로 출입문에 부착하는 등 비상시 안전관리에 미흡하였음. | 계 부착하도록 “현지시정” 조치함. | |
| 48 | 현지시정 | △△과 조직보관장 시건장치 관리 미흡 | △△과 조직샘플 보관장(지하 1층 주차장 통로)은 시건장치를 하여 운용하여야 함에도, 일부(6개) 보관장은 열쇠 잠금장치가 풀려있어 분실 및 도난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검체 관리부서인 △△과로 하여금 즉시 시건장치(이중)를 보완하도록 “현지시정” 조치함. | 특정감사안전관리 및 재난대비체계 점검 |
| 49 | 주의 | 시설물 안전대비 체계 부적정 | 시설관리용역 업체의 시설물 정기 점검 및 각 운용부서의 보완요청 등에 의한 사후적 조치는 일부 수행하고는 있으나, 지침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의 적극적 예방을 위한 시설팀 직원의 자체적인 안전순찰조편성 및 그에 따른 보고 체계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팀에 “주의” 조치함. | 특정감사안전관리 및 재난대비체계 점검 |
| 50 | 주의 |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관리 소홀 | 2014.1월부터 11월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대장 등록부서가 70여개이나 이후 현저히 줄어 2015.5월에는 22개 부서만 등록하는 등 최근 지침 준수가 크게 미흡하며, 주관부서인 ☆☆☆☆실은 동 사항에 대한 등록여부를 점검하고 미등록 부서에는 등록을 독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하였음. | ☆☆☆☆실에 “주의” 조치함. | 특정감사안전관리 및 재난대비체계 점검 |
| 51 | 주의 | 외래객 식당 위생상태 점검 등 관리 소홀 | (주)★★★★ 매장과 주변을 실시한 결과 주방의 도마는 사용한지 오래되어 때가 끼고 스크래치가 많았으며, 배식 전에 미리 차려 놓은 음식은 뚜껑을 덮지 않아 이물질이 들어 갈 우려가 있었고 음식 보관 창고에는 걸레, 쓰레기통, 위생용품 같은 위기에 걸어 놓는 등 위생관리 | △△△팀에 “주의” 조치함. | 특정감사안전관리 및 재난대비체계 점검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가 미흡하였음. | | |
| 52 | 개선 | 시설안전관리 지침 관리 미 흡 | ○○팀 관장 『시설안전관리지침』 은 각종 설비현황에 신속한 신고 설 비현황이 보완되어 있지 않고, 별지 의 정전시 보고체계 및 상황팀 구성 현황에는 계약완료된 시설물관리 및 유지보수용역 업체인 ㈜◇◇◇◇ 전 기과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지침 관리에 미흡함이 있음. | 『시설안전관리지 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시어 적 정한 내용의 지침 이 공지·게시되도 록 조치함. | 특정감 사안전 관리 및 재난 대비체 계 점검 |
| 53 | 통보 | 무재해운동 미 시행 및 규정 관리 미흡 | 무재해운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 행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규정에 따라 준용하여야 할 동 운동 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사 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정' 또한 폐지 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규정 정 리가 미흡하였음. | 무재해운동 제도와 병원현실과 부합하 는 방향으로 업무 를 처리토록 “통 보” 조치함. | 특정감 사안전 관리 및 재난 대비체 계 점검 |
| 54 | 권고 | 1동 로비 및 외래 시각경보 기 설치 | 1동 6층이상 리모델링한 구역은 시각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내 원객이 많은 1동 로비 및 외래에는 구법을 적용받아 시각경보기가 설 치되어 있지 않음. | 2016년 예산에 반 영하여 공사 예정 임. | 특정감 사안전 관리 및 재난 대비체 계 점검 |
| 55 | 현지 시정 | 소방시설관리 미흡 | 병동부 13층 중앙계단 피난대피로 주위, 지하1층 식당주방 방화셔터 하단부 등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었 으며, 8층 중앙계단 방화문은 전면 개방되어 있는 등 화재 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로서의 용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어 관리가 소방시설 관 리가 미흡하였음. | 적재물을 즉시 제 거토록 하였고, 개 방된 문은 순찰을 강화하여 항시 닫 힘 상태를 유지하 도록 “현지시정” 조치함. | 특정감 사안전 관리 및 재난 대비체 계 점검 |
| 56 | 현지 시정 | 작업장 위험방 지 조치 미흡 | 공사현장 3층 천장공사 작업자의 현장내 안전모 미착용 등 2건, 절단 작업 시 불티방지커버 미사용 1건, 위험물저장시설 시건불량 1건 등 공 사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함이 있었 | (주)☆☆☆로 하여 금 현장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확인 철저, 용접 및 절단 작업 시 불티방지 | 특정감 사안전 관리 및 재난 대비체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음. | 설비 사용확인 및 인화물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주관부서인 ◎◎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현지조치함. | 계 점검 |
| 57 | 시정 환수 | 편의시설 임대료 징수 부적정 | 2013.10월부터 2015.6월까지 (주)★★★★과 (주)☆☆☆☆은 쿠폰사용액을 임대료 산정액에 포함하지 않고 △△팀에 통보하였으며 △△팀은 제출된 임대료 산출자료의 적성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 동 기간 동안 (주)★★★★ 등은 250,572,339원의 임대료 산정액을 누락하였으며 △△팀은 (주)★★★★로부터 70,087,326원, (주)☆☆☆☆으로부터 15,833,931원 등 총 85,921,257원의 임대료를 누락하였음. | 매출수수료 누락분 85,921천원 환수. 전현직 관련자 6명에 주의 및 경고 조치함. | 분당행정부문 |
| 58 | 시정 환수 | 개인연구원 진료비 지원한도 관리 부적정 | 개인 연구원 임○○에 대해 2013년 1년 동안 3,705,655원을 지원하여 연간 한도금액 3백만원보다 705,655원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등 총 9명에 대해 연간 지원한도를 넘어 총 2,178,977원을 초과 지원하였음. | 연간 지원한도액 초과분(2,179천원, 9명) 환수함. | 분당행정부문 |
| 59 | 시정 환수 | 승강기 유지보수 등 용역비 과다지급 | 2011.3.30.에 ☆☆☆☆(주)와 승강기 유지보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장 내 용역인원이 5명인데도, 주민세 종업원분 2,564천원을 계상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2011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총 10,171천원을 용역비에 과다계상하여 업체에 지급함. | 과다지급된 주민세 종업원분 10,170천원 환수. 주민세 종업원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변경함. | 분당행정부문 |
| 60 | 시정 | 가족수당 지급 | ☆☆☆☆☆☆과 하○○은 2014.3.12. | 과다지급된 가족수 | 분당행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환수 | 부적정 | <p>어머니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팀에 통보하지 않아 15개월간 총 300천원의 가족수당을 수령하는 등 임상교수요원 2명이 총 560천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p> <p>또한,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지급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나, ★★★★★과 김○○의 어머니가 만57세 4개월임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자체전공의 5명(부양가족 7명)에게 총 1,060,000원의 가족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음.</p> | <p>당 1,620천원(7명) 환수.</p> <p>◇◇팀에 주의 조치함.</p> | 정부문 |
| 61 | 시정 환수 |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및 이에 대한 제재 조치 미이행 | <p>○○○○과는 부서운영경비로 지급 받는 법인카드로 2014.4.1.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인 레저업소에서 500,000원을 사용하는 등 3개부서에서 11건, 총 1,001,490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함.</p> <p>법인카드 관리부서인 △△팀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출서류를 보완 또는 반려하여야 하고 사적사용한 경우 환수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11건에 대하여 업무 관련성에 대한 소명 없이 지출을 승인하는 등 법인카드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를 소홀함.</p> | <p>부적정하게 사용한 1,000,490원 환수.</p> <p>☆☆과, ◇◇과, ★★★★★과, △△팀에 주의 조치함.</p> | 분당행정부문 |
| 62 | 주의 | 제한경쟁입찰시 제한기준 설정 부적정 | <p>2014.11.7. 입찰공고한 “1동 병실 공조환경 개선공사”에서 실적을 제한함에 있어 추정금액인 53백만원의 2배 가까운 1억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으며, 또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시설공사(건축)”를 포함한 6건의 공사는 ‘서울특별시 및 경인지역인 업체’로 제한한 바,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p> | <p>☆☆팀에 주의조치함.</p> | 분당행정부문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63 | 개선 |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율 관리 부적정 | △△카드사 마일리지요율(0.2%)은 ■■카드사의 마일리지요율(0.6%)보다 낮아 2013.1.1.부터 2015.6.30.까지 △△카드를 ■■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했을 경우 33,514천원(추정액)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수입 처리할 수 있었으나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기대수익이 감소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본원의 법인카드의 마일리지 요율(0.9%)과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카드사에 마일리지 요율변경 요청하여 2015.09.01.부터 새로운 마일리지 요율적용. | 분당행정부문 |
| 64 | 주의 | 진료비 감면규정 개정관리 소홀 | ☆☆팀은 진료비 감면규정개정을 ◇◇◇팀에 요청하지 않았고, 감면대상 삭제에 대한 내용을 문서접수한 ◎◎◎◎◎은 규정개정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진료비 감면규정」이 개정되지 않았음. | 2015.08.05. 진료비감면규정 개정 완료하고, ☆☆☆팀, ◇◇◇팀에 주의 조치함. | 분당행정부문 |
| 65 | 개선 | 민원 회신기간 관리 미흡 | 2013.1월 ~2015.5월까지 접수된 민원 중 7일 이내에 처리한 민원은 전체 민원 건수의 17%인 156건에 불과하고, 처리기간 7일을 초과한 민원은 120건(13.1%)이며, 민원인에게 회신한 날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민원이 640건(69.9%)에 달하는 등 민원 관리가 미흡하였음. | 향후 민원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준수토록 함. | 분당행정부문 |
| 66 | 권고 | 인터넷 전용회선 퍼브넷 서비스 활용 방안 강구 | 분당병원에서 사용 중인 인터넷 이용료(◇◇, ○○○○○○○)는 월 11,199,760원으로 「퍼브넷 서비스」보다 월 3,055,060원이 높음. ☆☆☆☆장으로 하여금 퍼브넷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에 이용 중인 인터넷 서비스의 계약금액을 퍼브넷 서비스 이용금액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관련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검토토록 권고함. | 요금변경에 대하여 협의하고 계약변경 추진함. | 분당행정부문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67 | 시정 환수 | 전산관련 외주 위탁 계약관리 업무 소홀 | ☆☆☆☆팀은 ★★★★★(주)이 ‘PC 및 주변기기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인력 4명 중 3명만 투입하였음에도, 실제 과업에 참여하지 않은 1명분의 인건비 4,256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또한 자산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담당자는 자격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지 아니함. (주)◇◇◇◇◇의 교체 투입자인 배○○의 자격등급 등을 제출받지 아니하는 등 외주위탁 계약관리 및 검수업무에 소홀함. | ★★★★★(주)로부터 4,255천원 환수. 관련자 2명 주의 조치함. | 보라매 행정부 문 |
| 68 | 개인 주의 | 행복관 UPS 분해수리 발주 업무 부적정 | UPS를 수리함에 있어 병렬운영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일괄계약 후 순차적으로 수리할 수 있음에도, 2015.4.24, 6.22, 7.28 3회에 걸쳐 UPS 1~3호기를 1인 건적만 받고 각각 분리 발주함. | 관련자 2명 주의 조치함. | 보라매 행정부 문 |
| 69 | 주의 | 전자입찰 개찰 관리 미흡 | 계약담당 김○○은 [방사선재료]A SAHI MEISTER MICRO WIRE 외 50종에 대한 입찰 공고 시 응찰마감시한과 개찰일시를 각각 표시하였으나 실제 개찰은 약 71시간 경과 후에 이루지는 등 총 349건의 입찰건 중 66건은 특별한 내용검토와 시간이 요구되지 않는 최저가 입찰임에도 최장 4.2일(101시간) 이후에 개찰하는 등 개찰관리가 미흡하였음. | □□과에 주의 조치하고, 지적사항 공람 및 자체교육 실시함. | 보라매 행정부 문 |
| 70 | 주의 | 감사규정에 따 른 일상감사의 수감관리 부적 정 | △△△△팀은 2015.2.27. “2015년도 서비스디자인 사업계획(안)”을 결재함에 있어 일상감사를 미경유하는 등 3개부서 총 7건은 일상감사대상임에도 일상감사를 경유하지 않고 시행하였는바 감사규정을 준수하 | △△△△팀, ◎◎◎팀, ○○○○실에 주의조치하고 관련 사항 공지함. | 보라매 행정부 문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지 아니하였음. | | |
| 71 | 시정 | 책임경영제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정산업무 소홀 | 2013.2분기 경영우수부서 포상으로 △△△과에 지급된 2,800천원을 정산기일인 2013.7.31.까지도 정산증빙서류를 받지 않는 등 총 17개 부서 15,300천원의 포상금 지급액에 대한 증빙서류 등의 정산 관리를 소홀함. | 증빙서류 미제출건 수령함. | 보라매 행정부 문 |
| 72 | 권고 | 301네트워크 사업추진을 위한 직원채용(계약) 부적정 | ◇◇◇◇사업단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301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직원(1년 계약직)의 채용을 총무과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채용공고 및 전형 등 채용절차를 거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담당직원은 단시간 근로자로 한시 정원 배정 후 총무과에서 채용함. | 보라매 행정부 문 |
| 73 | 권고 | 신용카드 공용매출전표 제작비용 청구 미흡 | 본원 대비 BC카드사는 1.1원, 신한카드 1.4원, 외환카드는 6.4원을 낮게 협약을 체결하여 본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연간 약 1,133천원의 추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신용카드 공용매출전표 제작비용 협약갱신 시 단가인상 요청하는 공문 발송함. | 보라매 행정부 문 |
| 74 | 권고 | 보라매병원 발전후원금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 | ☆☆☆☆팀에서는 후원금 입금계좌(보통예금)의 이자율은 0.1%로 운영계좌(MMF)의 이자율 1.44%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있음에도 후원금 입금계좌 잔액은 2015.1.1. 기준 171,548천원에서 8월 28일 현재 225,430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여유자금을 계속 입금계좌(보통예금)에 남겨 둬으로써 1,552,998원의 추가 수익금을 발생하지 못함. | 최소한의 지출예상액을 제외한 잔액 전액을 별도 운영계좌로 이체함. | 보라매 행정부 문 |
| 75 | 통보 | 임직원 외부강의 신고관리 소홀 | 2015.1월 이후 ★★★★★협회 교육센터 및 ◇◇신문(의학전문지) 등에서 강의사실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 그룹웨어 게시판에 외부강의 신고서 양식을 게시. | 보라매 행정부 문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외부강의 15건(총 5,436천원)이 교육연구실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3건은 근무시간 중임에도 출장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
| 76 | 현지 시정 |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부적 정 | □□팀은 방화문을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사랑관 1층 옥내소화전 및 희망관 1층 방화문 앞에 지장물이 놓여 있으며, 행복관 승강기 입구 방화문이 개방되어 있고, 장례식장 영안실 내 비상유도등 앞에 근조화환들이 비치되어 있는 등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미흡하였음. | 행복관 승강기 입구 방화문에 설치된 고임목을 제거하여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옥내소화전 및 방화문 앞에 지장물을 제거하고, 장례식장 영안실 앞의 근조화환들이 방화시설 앞에 놓이지 않도록 각각 “현지시정” 조치함. | 보라매 행정부 문 |
| 77 | 주의 | 선택진료 관련 경비 정산관리 부적정 | △△△△과는 2012.1월분 선택진료관련경비(휴일근무 성과급)로 17,500천 원을 지급받는 등 최근까지 45개월간 969,227천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선택진료경비 및 관련경비 집행내규」에 따라 집행내역을 기록 관리하지 않았으며, 진료행정팀장에게 집행내역과 정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내규 준수 및 정산관리 업무가 미흡함. | 영상의학과에 주의 조치함 | 본원진 료부문 |
| 78 | 주의 | 자산관리 미흡 | ☆☆과는 소관 의료장비인 MICRO TOME ROTARY(관리번호 : PA610103)를 2013년경에 망실하는 등 총 2건을 망실하였으며, ★★★과는 소관 운영장비인 BETA GAMMA PORTAL M(관리번호 : NM610015)을 2 | 핵의학과에 주의 조치함. | 본원진 료부문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001.7월 ★★★과 개보수 공사로 인한 이전과정에서 총 3건을 망실하였음에도, 자산관리지침에 따른 망실 보고서를 통합물류부로 송부하지 않아, 지침 준수 및 자산관리가 미흡함. | | |
| 79 | 시정 | 의료장비 미신고 행위료 삭감 발생에 따른 이의신청 청구누락 | ○○○○팀에서 의료장비 미신고로 삭감된 청구진료비는 환자 박** 등 총 14건(3,378,037원)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중 8건(2,619,747원)은 이의신청하여 입금되었고, 환자 최** 등 5건(616,408원)은 심평원에서 심사진행 중으로 확인되었으나, 2012.12월 노** 환자의 행위료 ‘특수전기충격요법[마취하]’ 1건(141,882원)은 삭감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특수전기충격요법 이의 신청함. | 본원진료부문 |
| 80 | 개선 | ◇◇◇과 응급 대불청구 업무 미흡 | 2012년부터 2015.10.월까지 ◇◇◇에서 발생한 대불청구 발생 건수는 353건(52,963,282원)이며, 그 중 344건(50,880,040원)은 대불청구를 완료하여 155건(25,014,370원)은 입금 받았으며, 189건(25,865,670원)은 청구 및 심사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동 기간 ◇◇◇에서 발생한 외국인 및 주취로 인한 9명(2,083,242원)의 환자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하여 대불청구 하여야 함에도, 신원확인이 불가하여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대불불능건은 진료비관리파트로 이관 하도록함. | 본원진료부문 |
| 81 | 주의 | 의료기기 유지 보수 용역 검수 불철저 | ☆☆☆과는 업체에서 ‘14.6.1~’14.8.31.까지 3개월분의 보수기간에 유지보수를 시행하였으나, 서비스리포트는 3개월분을 제출하지 않고, 6월 | 의공학과에 주의 조치함. | 본원진료부문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분(7-8월분은 미제출)만을 제출하였음에도 분기보수료(3개월분)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하였고, '14.9.1부터 11.30.까지의 보수기간에 해당하는 검수조서 작성시에도 서비스리포트를 2개월분(9~10월분)을 제출하였음에도, 분기보수료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 하는 등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검수업무 관리가 미흡함. | | |
| 82 | 시정 | ★★★과 TCS 서버 개발 등 유지보수 보증금 미징구 | ★★★과는 계약기간 내 '★★★과 TCS개선 및 연구기능' 및 '★★★과 Cardiobase 개선 및 연구기능 개발'시스템 개발이 완료 되었는데, 이후 동 계약서 제20조에 따라 (주)△△△△에 유지보수 담보를 위하여 총 계약금액 69백만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6.9백만원을 유지보수 보증금(보증보험증권)으로 징구하여야 함에도 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보증금 보증보험증권 징구함. | 본원 진료부문 |
| 83 | 기타 | Inadequate Management of KPI(TA04) | The achievement rate in 2Q 2015 was 68.8%, but dropped to 66% in 3Q 2015. -Although Revenue Cycle Management(RCM) has been implemented in a variety of ways(e.g. investigating the possibility of no-show, managing appointments for new patient registration, overbooking, weekly reports etc.) to improve a achievement rate, the monthly achievement rate in November 2015 was just 56.8% which indicates that the appointment waiting-time for new patients must be better managed. | 진료의사별 workload 분석을 통하여 workload가 90%미만인 의사의 경우 진료 세션을 추가로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SKSH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84 | 기타 | Delay in Procurement for Some Medical Devices (KPI ES03) | <p>Although SKSH achieved the target rate of 100% in 2Q and 3Q 2015, this procurement process needs to be improved considerably as certain equipment could take up to 12months to procure.</p> <p>-For example, please note the procurement process for the following medical equipment:</p> <p>① Video Laryngoscope : Received procurement request (PR) in March, 2015, still waiting for re-approval by the First Party as of December, 2015 (status pending for 9 months)</p> <p>② Video-Assisted Thoracoscopic System(3D) : Received PR in April, 2015, final disapproval by the First Party was issued in November, 2015</p> <p>③ ENT work station : Received PR in December, 2014, final approval by the First Party was made in December, 2015 (after a period of 12 months)</p> | <p>관련부서들과의 미팅(2016.2.28.)을 통하여 Tracking Sheet를 작성하였으며, 2016년 장비 구매예정품목 85개중 2개는 구매완료하였음</p> | SKSH |
| 85 | 기타 | Ineffective Management of Preventive Maintenance (KPI EN05) | <p>The rate of 2Q 2015 was 70.6% and of 3Q 2015 was 75%.</p> <p>-In 2015, preventive inspection was mainly performed by suppliers (e.g. Al-Hayat, etc.)</p> <p>-Ineffective management of scheduling conflicts resulted in inspection delays and cancellations in the 2Q and 3Q(2Q 599/848, 3Q 1122/1148) of 2015.</p> | <p>대상품목 선정 및 횟수, 시기 등은 모두 사용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 후 확정하여 월별 스케줄을 작성, 점검시행토록 하겠음.</p> <p>QI 및 Patient safety team과</p> | SKSH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Also, monthly inspections were not regularly conducted according to schedule. Some equipment lacked inspection stickers(verify that inspection was completed). | 협력하여 정기적인 현장순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
| 86 | 기타 | Failure to Monitor the Process of Radiation Safety (KPI EN07) | -SKSH achieved the target rate(100%) in 2Q but unexpectedly received 0% in 3Q 2015. -The radiation protection team did not consider outsourced personnel when selecting the list of personnel who are in danger of radiation exposure and thus require a Thermoluminescent Dosimeter(TLD) badge. -7 TLD badges remain unaccounted for after personnel worked on night shift or personal went on leave. (6 in June~August, 1 in September~October) | 피폭 대상자 선정 프로세스를 구비하고 대상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겠음. 과별 방사선안전관리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적시에 배지가 배부, 수집, 제출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대상자들과 코디네이터들에게 reminder email를 발송,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적시에 badge가 수거될 수 있도록 하겠음. | SKSH |
| 87 | 기타 | Possible Shortfall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KPIs | -Most KPIs were related to quality improvement, but it is questionable if these KPIs are being effectively managed by the strategy department. -Although the JSRC made important comments regarding each KPI, there remains a lack of proper management and feedback. (Ex.1) In case of PPM, the inconsistency of stickers was pointed out in Q2, but there were no | Quality improvement team 및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KPIs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JSRC 및 매분기 validation 시 언급되는 내용들에 | SKSH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p>changes implemented. In Q3, this problem was pointed out again and this affected evaluation.</p> <p>(Ex.2) In case of radiation safety, it was scored unsatisfactory in Q2. Moreover, it was pointed out again in Q3 and were reflected in the evaluation.</p> | <p>대해서도 KPI지표들과 함께 performance improvement activities 등에 포함되어 관리되도록 관련부서들과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겠음.</p> | |
| 88 | 기타 | Delay in Payment of Performance Fee by the First Party | <p>Performance Fee for 3Q 2014 was paid after 48 days after receiving the invoice(January 8, 2015). Furthermore, although the Second Party sent the invoice for performance fee for 2Q 2015 on October 28th, 2015, the payment has still not been received as of December 31, 2015.</p> | <p>운영수수료 지급기한 미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inance Team이 MOPA와 논의할 예정임.</p> <p>2015년 3분기 부터는 지급기한 도래 1주일 전에 SKSH 지원국에서 MOPA에 reminder 메일을 발송할 예정임.</p> | SKSH |
| 89 | 기타 | Delay in Approval on Health Insurance of the Employees | <p>No contracts with any insurance company for the purpose of procuring health insurance were made as of December 31, 2015.</p> <p>-The process of reimbursement for employee's medical expenses just started from November,2015.</p> | <p>SKSH의 예산은 SNUH의 감사시행 전에 확정된 바, 2017년도에는 관련예산 확정 및 직원들의 의료보험가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MOPA와 계속 논의하겠음.</p> | SKSH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 직원들이 SKSH와 SKGH를 이용할 경우에는 100%, 그 이외의 병원에서의 진료는 내부규정에 의해 감면이 시행되고 있음. | |
| 90 | 기타 | Delay in Approval of Staff Recruitment | -The ambulance driver has not been hired as of December 31, 2015. ; although the 1st interview was conducted on May 13, 2015 and the final interview by the First Party was conducted on October 22, 2015. | 해당 인력채용의 건은 MOPA에서 최종 승인하였음. | SKSH |
| 91 | 기타 | Unpreparedness of the IT System | The IT Department proposed the development of internal ERP system, but the First Party responded that they had a plan to develop and implement a new ERP system soon. As of yet, the implementation schedule for this new ERP system has not been determined. -Before implementing this new ERP, the First Party suggested the use of an interim ERP system called PACT which was used by the Sheikh Khalifa General Hospital(SKGH). PACT is scheduled to be implemented during 2016. -According to Schedule 2 Section 5.3 (Information Technology Plan) of the HMSA, the Second Party is required to prepare an IT Plan at least once every quarter. However, total IT plan has yet | 관련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MOPA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음. IT Team과 실사용자간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하여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장기적인 IT Plan을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 SKSH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p>to be completed.</p> <p>-Additionally, in order to maintain business continuity, a back-up and recovery system should be installed, but SNUH's audit team didn't find any back-up and recovery system.</p> | <p>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p> | |
| 92 | 기타 | Inadequate Support to Obtain Medical Staff Personnel's Credentials | <p>Physicians can acquire a license by submitting an application with a Korean doctor's license.</p> <p>-However, nurses and Associated Health Professional(AHP)s must take the UAE's license exam unless he/she has obtained a license from an exempted country(e.g. USA, UK, etc.) or has obtained at least a master's degree.</p> | <p>MOH와의 우호적 관계를 위하여 Invitation 레터를 발송하였음.</p> <p>SKSH 지원국에서 추가시험없이 면허를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레터를 MOH 측에 추가로 발송하는 것도 고려 중임.</p> | SKSH |
| 93 | 기타 | Too Short Term Insurance for Medical Malpractice | <p>SKSH has contracted 5 types of insurance for any possible incident including Medical Malpractice and Workmen's Compensation Premium.</p> <p>-The Oman Insurance Company has been providing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since November 1, 2014. This policy has been subject to renewal every 3 months. (limit of liability : AED 10,000,000 on any Occurrence and AED 20,000,000 in the annual aggregate, policy period : November-December 2015).</p> | <p>Clinical Affairs에서 1년 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Procurement Team에 제출하였음.</p> <p>Procurement Team에서 3월 내에 처리할 예정임.</p> | SKSH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A plan to obtain a 1 year insurance policy has been submitted to the First party on November 16, 2015. | | |
| 94 | 기타 | Absence of IT System to Report Financial Statements | There is no IT system to report financial statements to the First Party. -Thus, the finance department has been preparing financial reports manually by combining MS Excel spreadsheets submitted by the other departments during the monthly and year-end closing periods. | 재무회계 관련 자료 등이 자동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회계 관련 프로그램이 2016.2월에 완성될 예정임. | SKSH |
| 95 | 기타 | Omission of Monthly Operating Account Transaction Report | -The finance department has not provided such OATR to the First Party since Grand Opening of the hospital on April 1, 2015. | 보고서 양식 및 제출 시기 등과 관련하여 MOPA와 협의할 예정이며, 승인 후에는 매월 말일로부터 7일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 SKSH |
| 96 | 기타 | No Write-down of Expired Medications | Medications with expiry dates between November, 2014 to September, 2015, were stocked in the pharmacy inventory warehouse separately from other medications. -The pharmacy department did not provide the list of expired medications to the finance department, so the finance department could not adjust the amount of write-downs when updating the net realizable value of inventories. Expired medications consist of 92 items(14,702 ea) and the total amo | 약제부에서 유통기한이 만료된 약품을 조사하여 관련 자료를 재무부서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겠음. 병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서들과의 미팅을 통하여 해당문제를 | SKSH |

| 연번 | 처분 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 | | unt is 81,567 AED. | 논의하겠음. | |
| 97 | 기타 | Currency Conversion Errors on Foreign Currency Contracts | <p>There were some errors in the exchange rate of US dollars to AED when recording the value of the foreign currency contracts in the logistics IT system.</p> <p>-US dollars should have been converted to AED at the correct exchange rate(1 USD = 3.67 AED), but were instead converted at the wrong exchange rate(1 USD =1 AED) in the logistics IT system and the financial statements.</p> | <p>Procurement Team Manager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임.</p> <p>장기적으로는 전산에서 자동변환이 될 수 있도록 HIS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임.</p> | SKSH |
| 98 | 기타 | No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Revenue Accounting | <p>-The RCM recognizes healthcare service revenues when billing summaries are invoiced to patients.</p> <p>-Thus, if inpatients remain in the hospital for several months, the billing summary will not be issued to them until they get discharged.</p> | <p>2015년에 미인식한 수익을 2015년도 말에 반영하겠음.</p> <p>2016년도 IT시스템 개발됨에 따라 발생주의에 의거하여 인식할 예정임.</p> | SKSH |

외부감사(감사원) 결과 조치내용 요약

| 연번 | 처분사항 | 지적사항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1 | 주의 | | 구매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생화학분석기를 고가로 구매하도록 한 관련자 주의. | 관련자 3명 주의 조치함. | |
| 2 | 통보 | 생화학분석기 구매업무 부당처리 |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모델규격과 가격을 변조하여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기망 행위를 한 주식회사 ○○에 대하여 부당업체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제하고,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함. | 주식회사 ○○을 부당업체로 지정(15.04.01. ~ 09.30.)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하였으며, 59,276,170원 환수함. |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
| 3 | 주의 |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정보와 원가정보 수집 관리 부적정 |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함. | 진료과 및 진료지원부서 교육을 통하여 보험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안내 숙지하여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택진료비과다징수 관련 전산 오류 수정함. |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
| 4 | 주의 | 의료용 가스구매 입찰업무 부적정 | 특정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수 있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함. | 관련자 “주의” 조치함. |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사항점검 |